

이사회규정 신규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	사유
<p><b>제 4 조【구성】</b>                     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4 조【구성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.                      1.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2. 이사회추천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3. 내부거래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4. 감사위원회                      5. 지속가능위원회</p>	<p>이사회 내 위원회별 명칭 조항 추가</p>
<p><b>제 5 조【의장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의장의 임기는 해당 이사 임기 만료시 까지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최초 이사 선임일을 기준으로 가장 먼저 선임된 이사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된 일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가 수인인 경우 선임 대표이사로 한다. 대표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부사장, 전무, 상무의 순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.</p>	<p><b>제 5 조【의장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~ ②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③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. 만약 의장이 지정한 이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아닌 대표이사, 전무이사, 상무이사 및 이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이러한 순서에 의하여도 의장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집된 당해 이사회에서 이사들간의 협의로 정하기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삭제&gt;</p>	<p>이사회 의장의 직무 대행 명확화 및 모호한 규정 삭제</p>
<p><b>제 6 조【관계인의 의견청취】</b>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                      이사회의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<b>제 6 조【자료제출 요구권 등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사회는 부의된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닌 임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</p>	<p>자료제출 요구 조항 신설</p>
<p><b>제 10 조【결의방법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전화 및 화상회의, 기타 유사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여 이사회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제 10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	<p><b>제 10 조【결의방법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다만, 상법 제397조의2(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금지) 및 제398조(이사 등의 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~ ④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⑤ 이사회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도의 소집 통지는 아니할 수 있다.</p>	<p>자기거래 등에 해당될 경우의 구체적 결의방법 추가</p>
<p><b>제 14 조【이사회 내 위원회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이사회 내 각종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위원회는 2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단, 감사위원회는 3 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③ 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                     ④ 위원회의 권한, 운영 등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.</p>	<p><b>제 14 조【이사회 내 위원회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&lt;현행과 같음&gt;                     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고, 이 경우 관련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사항 중 일부를 각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할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                     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 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                     4. 정관에 정하는 사항                      ③ ~ ⑤ &lt;② ~ ④ 현행과 같음&gt;</p>	<p>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 관련한 조항 추가</p>
<p>&lt;신설&gt;</p>	<p><b>제 17 조【사외이사의 업무수행 지원】</b>                      ① 사외이사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임직원 또는 외부감사인, 법률고문 등의 외부 전문가의 지원 또는 자문을 받을 수 있다.                      ②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 1 항에 정한 지원 또는 자문에 소요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</p>	<p>사외이사의 업무수행에 관한 회사의 지원 조항 신설</p>